

2025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청 관련

Q1.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① 대전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시정자료실-고시/공고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① 대전 청년 전·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 → 2025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나의 지원사업관리 →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Q3.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 가능한가요?

- ①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자 세대주인 청년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Q4.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 가능한가요?

- ① 신청 완료 후에는 제출 서류 확인 및 수정 등이 불가합니다. (보완기간: 9월 3일 ~ 9월 5일)

Q5.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①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한국인이고, 한국인이 월세를 신청하며, 납부하는 경우, 외국인, 재외국민 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등재된 자

Q6.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아이핀 인증 방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핀(i-PIN)을 발급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아이핀 발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아이핀 신규 발급 시 별도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유료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아이핀 발급처 :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1600-1522)
범용공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나이스평가정보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7. 타 시·도에서 월세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데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타 시·도에서 다른 월세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Q8.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① 현재 수혜 중 또는 수혜 이력이 있다면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생애 1회)

Q9. 대전 청년 월세지원과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 ①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자 나이 구간(19~39세)을 지정하고 있고, 거주요건과 소득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으로 접수를 받았으며 '25.2.25.일 마감되었습니다.

2 주민등록·거주 및 자격요건 관련

Q10. 신청 가능한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 1985.1.1.~2006.12.31.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 이후에는 연령이 초과하여도 지원 유지

Q11. 실제 거주는 대전, 주민등록은 세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① 신청 불가합니다. 대전시 내에서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주택 소재지가 모두 동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Q12. 청년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①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대상 가구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신청 가능 연령(1985~2006년생)에 포함되는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자
※ 세대원 연령 기준 요건 없음

Q13. 임대차계약서 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나요?

- ①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상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14.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또는 신청 페이지 특이사항 란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연장 관련 내용을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Q15.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①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임대차계약서상 명의인)
- ※ 동거인인 경우: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실제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이체하고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1인당 분담액 기준 거주요건 동일)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2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지분이 6:4로 명시되었을 경우)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60만원 / 보증금 8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 대상

Q16. 임차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세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① 신청 불가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1억원 이면서 및 월세 60만원 이하 모두 충족할 경우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전월세환산액이 80만원 이하일 경우

Q17. 신청 가능한 주택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신청 가능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Q18. 고시원에 거주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 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①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청일 : 9. 5. / 월세 납부일 8. 25.
⇒ 계약기간 : 8. 25. ~ 10. 31.

Q19.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 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모, 형제 등 타인인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Q20. 사업 신청기간 중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인 8월 14일 18시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입주, 전입신고 후 온라인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인정됩니다.
- ※ 8월 14일 이후 계약 및 전입 신고한 경우는 제외 대상

Q21. 확정일자 받을 수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 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Q22.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 계약서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3. 사업 신청 이후 심사 기간에 이사 예정이라면, 신청 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 ①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입력하시고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선정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완료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청 후 지급 신청하여야 당월 지급 가능)
- ※ 선정 후 이사로 인한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 초과 시 중지 대상
- ※ 대전시 외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중지 대상

Q24.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거주요건 금액 초과,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 주거지원·금융지원 등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었거나 개인 거래 통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5.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① 신청 불가합니다.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市)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Q26. 주택소유를 판단할 때 세대원도 해당되나요?

- ④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거인은 제외

3 소득 요건 관련

Q27.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④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6월분 고지금액이 공고문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금액 이하를 충족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Q28. 건강보험료 해당월 금액이 과다(과소)하게 고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④ 해당월 보험료가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직장(지역)보험료 조회 → 상세조회(최근순)
※ 해당 경로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

Q29. 가구원 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④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인터넷(정부24), 네이버 앱 또는 카카오톡의 전자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등재된 자

4 선정기준 및 급여 지급 FAQ

Q30.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④ 2025년 총 선정인원은 3,000명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선정방법(소득 60%, 임대료 40%)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총점이 같을 경우, 소득낮은 순 → 연장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Q31.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무조건 20만원을 지원하나요?

- ④ 임차인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월세) 내에서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만큼만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임차료 40만원 ⇒ 20만원 지원
임차료 15만원 ⇒ 15만원 지원

Q32. 월세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되나요?

- ④ 월세 선(先)납부 후 매월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확인 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월별 지급됩니다.
※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지급계좌와 통장사본 계좌가 **동일**해야 지급가능
※ 수취불가 계좌 및 적금계좌 불가

Q33. 지급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④ 선정된 후 지급신청 기한(월별 1~10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과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전월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일자 :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
- 월세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받는 사람의 성명, 계좌번호 명시
※ 통장사본은 첫 지급신청시에만 제출하며, 2회차 지급신청시에는 계좌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신청 + 통장사본 첨부

Q34. 월세를 카드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이체확인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④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발급기관에 문의 요망

Q35. 대상자 선정 후 월세를 지급받다가 지급 중지될 수 있나요?

- ④ 주택 구입, 월세 없는 전세 이사, 대전시 외 지역으로 전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거·금융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 대상입니다.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으므로, 중지 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반드시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구비서류 및 기타 FAQ

Q36.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④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37. 결혼장려금을 신청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④ 신청이 불가합니다. 결혼장려금은 사회보장 협의 당시 주거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동시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이미 수령하였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능합니다.

Q38.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④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청약홈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주택 유형 및 크기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문의 : ☎1644-7445)

Q39.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④ 공고일(2025. 7. 23.)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40.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나요?

- Ⓐ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직인 생략'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인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Q41.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모든 제출서류는 미리보기 및 열람용이 아닌 정식 발급본(출력본) PDF 파일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2장 이상의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또는 압축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2.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 Ⓐ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무주택 확인을 위하여 뒷자리까지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43.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 추후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된 이후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됩니다.

Q44. 사업 선정 후 세금신고,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 Ⓐ 세금신고 및 연말정산 관련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 바랍니다.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 문의: 국번없이 126(일반 통화요금 적용)

Q45.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이 산출됩니다.